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6일, 유용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4. 11. 27.)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3차 전체회의(2024. 11.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
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용원의원)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
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

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개정안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의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생략)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현행과

현행	개정안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생략)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제43조(사망조위금) ①·② (생략)	같음) ② ----- ----- ----. 다만,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43조(사망조위금)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 다만,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법 제10조제1항¹⁾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²⁾ 중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1.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2.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 가. 재활운동비
 -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 가. 장해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³⁾, 현행법 제36조 및 제38조와 제43조⁴⁾도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
- 나. 장해일시금
 - 4. 간병급여
 - 5. 재해유족급여
 - 가. 장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급여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6. 부조급여
 - 가. 재난부조금
 - 나. 사망조위금
-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 1.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 2.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6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 1.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 2.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3. 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 4.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을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⁵⁾임.

개정안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추어 산정함으로써 예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봄.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직 후 특별승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 가	일반직	4	1	-	-	4
	경찰직	14	17	18	21	7
	소방직	6	2	3	4	2
지 방	일반직	11	6	9	8	3

주: 일반직은 승진임용일 기준, 경찰·소방은 사망일 기준 통계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 계급 기준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 소득월액에 반영할 경우 유족연금 등의 증가분은 특별승진한 계급 및 대상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수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특별승진한 사례를 기준으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에 따른 유족연금 등 증가분 사례(예시)>

<예시> 주요가정 : 대상자의 기준소득월액 552만원('24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특별승진 (소방위→소방경)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액('24년 봉급표 기준 평균) : 245,220원, 유족 3명 가정

(단위 : 원)

급여 종류	지급률	현행(A)	개정시(B)	증가분(C)
순직유족연금	53%	2,925,600	3,055,566	129,966(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8%	3,201,600	3,343,828	142,227(월)
사망조위금	2배	11,040,000	11,530,440	490,440

* (C) = 특별승진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액(245,220원)*지급률 = (B) - (A)

자료: 인사혁신처

다만,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나 군무원 등이 해당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⁶⁾⁷⁾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형평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봄.⁸⁾

아울러 현행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이 지급받은 과세소득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⁹⁾ 공무원 사망 후 특별승진된

6) 「교육공무원법」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군무원인사법」 제15조(승진)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특별승진임용)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일반군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승진) 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7) 외무공무원의 경우 참서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 다만, 특별승격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음.

8) 적용 대상의 범위를 일부 공무원으로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종을 특정하여 적용 대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겠으나, 특별승진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포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추상적 요건의 형태로 문언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하위법령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19억 9,9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¹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93년>

(단위: 백만원)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순직유족연금(안 제36조제2항 단서 신설)	57	282	836	1,379	1,882	2,198	2,230	2,175	2,152	1,542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16	81	239	398	537	618	626	611	606	437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0)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안) 비용추계서」 참조

사망조위금(안 제43조제3항 단서 신설)	23	22	21	21	20	20	19	18	18	20
합계	96	385	1,096	1,798	2,439	2,836	2,875	2,804	2,776	1,999

주: 1. 순직유족연금(안 제36조제2항 단서 신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사망조위금(안 제43조제3항 단서 신설)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승진 순직공무원이 매년 29명(순직 22명, 위험직무순직 7명)이 발생하고 유족은 3명이며 대표유족(유족연금수급자)은 여성 배우자, 연령은 각각 50세(순직유족연금), 51세(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로 가정하고,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첫연금액 평균액 등을 활용하여 특별승진 반영 시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3. 유족연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장기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어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93년까지로 하고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사혁신처는 추서된 경우 명예적 보상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일 필요성에 공감하나, 적용대상 직종 및 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군인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보상을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743호) 및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91호)이 국방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